

보도시점 2026. 8. 26.(수) 10:00 / 배포 2026. 8. 26.(수) 08:30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정유사-주유소 간 전속거래 및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적 거래조건 마련 -
- 주유소 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 후속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공급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주유소 간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대리점법 시행('16.12월) 이후 식음료·의류·통신 등 19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既 제정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및 사후정산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전속거래: 특정 정유사로부터 제품 전량을 공급받는 계약으로 주유소의 선택권 제한
사후정산: 월 평균가로 익월에 정산하는 등 제품 공급 뒤 상당기간 후 정산가격 결정

이에 주유소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주유업계-모든 정유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한국주유소협회-정유4사(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간 체결('26.4.9)

<상생협약 상 주요 합의사항>

- ▶ 전량구매 계약은 60%이상 구매를 약정하는 혼합계약으로 변경한다.
- ▶ 구매비율을 이유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 ▶ 정유사는 일일판매기준가격을 사전에 공시한다.
- ▶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주유소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허용한다.

공정위는 해당 업계의 기존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에 담긴 주요 합의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사)한국주유소협회와 4대 정유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주유소의 혼합구매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정유사의 사후정산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에서 탈피하여,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유사-주유소 간 석유제품 공급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정유사가 주유소에게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금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혼합구매가 새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업계 합의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업계의 관행을 바꿔나가려는 취지

또한,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정유사가 제품의 공급가격, 공급물량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 현행 공정거래법 상 ‘차별적 취급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무 부과 아님

다음으로, 정유사에게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하여, 최종가격이 즉시 확정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업계에서는 주유소가 발주 시점의 가격으로 우선 구매한 후 한 달 뒤 월 평균가격으로 정산하고 있어 구매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최종가격이 확정되는 구조이다. 사후정산제가 폐지될 경우 거래조건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주유소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주유소의 경우 사후정산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주유소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후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한 달과 같은 장기간이 아닌 7일 내 정산하도록 하였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석유유통업계 개별 계약에 반영됨으로써 **혼합 판매가 활성화**되고 **석유공급 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투명한 가격 결정**을 통해 주유소가 더욱 자유롭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유통업계의 거래관행 변화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1>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2>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실 유통대리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태모 (044-200-4960)
		담당자	사무관	박준영 (044-200-4965)



[붙임1]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 [상품의 취급 및 확보] < 신 설 >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대리점이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한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6조 [상품의 취급 및 확보] ① <u>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상품의 수량은 대리점의 월별 총 구매량의 60% 이상 범위에서 대리점과 공급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u> ② ----- ----- ----- ----- 이유로 <u>공급가격, 공급물량 및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대금의 지급] < 신 설 > ① ~ ⑥ (생략)	제8조 [상품대금의 결정 및 지급] ① <u>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상품을 발주한 시점의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 발주 후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7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결정할 수 있다.</u> ② ~ ⑦ (현행과 같음)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0. 12. 31. 제정

2022. 12. 20. 개정

2023. 9. 27. 개정

2026. 8. 26.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석유유통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 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담보금 : 납품금액의 ()%, 일금 원정 (₩)
- ◇ 납품방법 및 장소
- 납품방법 :
- 납품장소 :
- ◇ 상품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수단
- 지급시기 : 매월 ()일
- 지급수단 :
- ◇ 지연이율 : 연 6% (상사법정이율)

_____ (이하 ‘공급업자’)와 _____ (이하 ‘대리점’)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그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업자

대리점

상호 또는 명칭:

전 화 번 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상호 또는 명칭 :

전 화 번 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 ③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관련 법령 준수와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직접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거래형태]

- ① 공급업자는 자신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상품 중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점에 납품하고 대리점은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다.

제5조 [상품의 발주와 청구 등]

-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생산 또는 구매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상품의 공급기일과 수량에 관하여 협의하여 발주를 진행한다.
- ② 상품의 발주와 대금·반품 청구 등은 전산시스템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청구 내용 등과 관련하여 공급업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6조 [상품의 취급 및 확보]

- ①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상품의 수량은 대리점의 월별 총 구매량의 60% 이상 범위에서 대리점과 공급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대리점이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한다는 것을 이유로 **공급가격, 공급물량 및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원활한 상품 공급과 적절한 재고 확보·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의 공급]

-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점의 사업장에 운송한다. 다만, 공급 장소 및 공급방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물량·가격·공급기일은 발주의뢰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의뢰서는 상품의 종류·물량·가격·공급기일이 명시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산기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공급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장소·기일에 차질 없이 상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2항에 따른 상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리점에 이를 통지한다.
- ④ 공급업자가 제1항의 장소에 공급하면, 대리점은 지체 없이 물량 또는 하자 등의 검수를 하여야 하며, 공급내역을 확인한 후 공급업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다. 만일, 검수 물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대리점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당해 상품의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에서 대리점 공급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2. 대리점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상품을 발주한 시점의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 발주 후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7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대리점은 당월 공급받은 상품에 대한 총 매입액을 매 익월 ()일까지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합의로 상품대금 결제일 등 결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제2항에 따른 상품대금 지급 전 공급 상품명, 물량 및 단가 등의 내역을 확인·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리점이 정해진 대금결제기일 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리점은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⑤ 대리점의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는 차기 결제기일에 그 지연 사실과 지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5조에 따른 상품의 발주 후에 공급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대리점은 변동된 상품대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급가격 산정기준의 확인을 공급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9조 [담보]

-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리점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대리점에 게 요구할 수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공급업자의 연간 예상 공급금액의 ()% 이상으로 한다.
- ② 대리점은 부동산 담보의 제공,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의 제공,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담보액이 제공된 경우, 공급업자는 인적담보 등 다른 형태의 담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 ④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선택)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 부담 ☐ 공급업자 부담

제9조의2 [보증금 반환]

-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대리점은 정산수수료 등 폐점비용(미지급금)을 공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비용은 대리점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공급업자에게 지급한 거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대리점에게 거래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 반환기한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다.
- ④ 제3항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 등의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각 담보물의 조건 및 특성에 따라 반환절차를 진행한다.

제10조 [반품조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은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일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이의제기일로부터 ()일 내에 반품처리한다. 이 경우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 1. 공급시점에 공급받은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 2. 공급받은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 3. 구매 필요성이나 의사가 없는 상품을 공급업자가 구입하도록 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일 내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급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해당 상품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일 내에 반품처리 한다.
- ③ 대리점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반품 조건 및 기간 등 반품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④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도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반품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 ⑤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제11조 [판매장려금]

-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상호협의를 하에 상품 판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지급시기·지급횟수·지급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 ③ 공급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약정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판촉행사의 실시]

-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판촉행사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 기간,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업자는 사전에 대리점과 비용분담비율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리점 지원 등]

-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비용 또는 시설물, 물품, 전산시스템, 서비스 및 기타 상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 약정서로 정한다.
- ② 대리점이 제1항에 따른 공급업자의 자금 또는 시설물 등 지원과 관련한 채무를 완제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해당 자금 또는 시설물 등 지원과 관련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리점에게 대여 또는 지원한 시설과 물품 등을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영업지역]

공급업자는 기존 대리점의 인근 지역에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 대리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각종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

-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 상품 공급의 중단 등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의 종류나 물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내지 조사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대리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대리

점단체 설립 또는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⑩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영업양도 등]

-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공급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양도를 공급업자가 승낙하는 경우 제18조의 해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영업양수인은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7조 [상표와 영업상 비밀유지]

-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협의 하에 공급업자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기타 공급업자의 상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표시, 공급업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고유색상 및 디자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대리점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해제된 경우에 제1항의 상표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철거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상표 등의 철거 또는 제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 ③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경영정보, 교육 및 세미나 자료 등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후 ()년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급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점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계약해지]

- ①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은 서면에 의한 통보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는 공급대금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상품의 공급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7. 공급업자의 행위가 제15조 각 항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은 상대방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공급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특정 상품의 공급 중단이나 물량의 현저한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⑥ 공급업자의 귀책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유지 기간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한 재고를 보유하게 된 것이 공급업자의 일방적 판매 정책에 의한 경우, 대리점은 관련 물량에 대해 공급업자에 대하여 환입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만, 공급업자에 의한 부당한 계약해지에 있어서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재고 환입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대리점의 계약해지]

- ①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공급업자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상계]

제18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채권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 [손해배상/지연손해금]

-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정산 후 지체없이 상품대금, 장비대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합의할 경우 그 기일까지 변제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변제 의무를 지체할 경우 정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2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 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③ 대리점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관할 시·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4조 [계약의 효력 등]

-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____년____월____일

공급업자

대리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